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73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이용우・황정아・박민규

김남근 • 정진욱 • 김 윤

백승아 • 이광희 • 임미애

박희승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고용보험법」은 그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제반 문제를 안정적으로 점검·해결하고 배우자의 지원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음.

여성의 권리신장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향하여 아이를 낳은 부모의 생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난임치료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더욱 마음 놓 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 가. 현행법령상 월 통상임금의 80%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월 통상임금의 80%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4항).
- 나.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 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5조 등).
- 다.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 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일수를 '최초 5일'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되,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뒤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 ⑤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 그 밖에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5일"을 "기간 또는 같은 법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1 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 후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연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 ③ |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 ③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
| 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액은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 |
| | 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
| | 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되, 육아 |
| | 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대통령 |
| |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뒤 |
| | <u>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u> |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u><신 설></u> | ⑤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 그 밖 |
| | 에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 등에 |
|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
| | <u>한다.</u> |
| <u>⑤</u> (생 략) |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
|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 | |
| 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 | |
|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 | |
| 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 |
|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 |
| 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 |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 2. (생략)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생략)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u>기간 중 최초 5일</u>.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③ (생 략)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

| 배우자 출산휴가 또 |
|------------------------|
| 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
| 난임치료휴가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 2 |
| |
| |
| <u>기간 또는 같은 법 제18조</u> |
| 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 |
| <u>간</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77조(준용) ① |
| |

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 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 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② (생략)

| <u> </u> |
|------------------|
| 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
| 또는 난임치료휴가 |
| |
| ② (현행과 같음) |